

동두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0. 4. 29 동두천시장의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 5. 6

다. 상정일자 : 제9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하여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의 감사청구와 시행을 위한 목적을 정함.
- 감사청구시 연서해야할 주민의 수를 600명이상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1 내지 제10조의 18 규정에 의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연서수를 정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600명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됨.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주민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연서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어 주민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인원을 600명으로 하고자 하는데는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난 4. 13 총선시 20세이상의 연구수가 53,479명임을 참고할 경우 주민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1,070명의 56%인 600명 이상을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인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반대토론 : 홍순연 의원)

본 조례는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 1 이내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으로 주민의 수를 너무 많이 조례로 제정할 경우 감사청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조례 제2조의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600명이상”을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500이상”으로 수정하여 더 많은 주민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제출안	수정안
제1조(생략) 제2조(감사청구주민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u>600명</u>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생 략)	제1조(제출안과 같음)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 ----- <u>500명</u> ----- -----. 부 칙 (제출안과 같음)